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지도교수의 횡령

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 (4) 주관적 요건 -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피고인 B이 연구 책임자로 수행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1)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인건비 중 피고인 B과 연구원들이 매년 정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인 '일명 랩(LAB)비' 계좌로 반환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은 매년 연초에 과정별(학사, 석사, 박사과정)로 연구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협의하여 정한 후 실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가 위와 같이 정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연구실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는데, 그와 같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하는 이유는 연구원들이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위와 같이 모은 연구실 공동자금에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상당 금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실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인건비가 직접 송금된 이상 위
금원은 일단 이를 지급받은 각 연구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이 관리하던 연구실 공동자금에는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은 금원 이
외에도 연구실에서 수행한 사기업 공동연구과제 수입금이나 학회 개최로 인한 등록금
수입금 등이 혼용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
부를 반환받아 보관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관리하던 연구실 공동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
용한 행위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결이유 코멘트 -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
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
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횡

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